

第13回 全國圖書館大會 行事內容

1. 開會式

全國에서 參席한 420餘名의 會員과 大會長 李瑄根 會長 및 內外貴賓이 參席하여 上午 10時 正刻에 朴大權 事務局長의 司會로 大會가 開會됨.

開會式은 國民儀禮가 있는 다음 國民教育憲章朗讀 (徐仲錫 慶熙大學校中央圖書館長)에 이어 李瑄根 會長의 開會辭와 文敎部長官의 激勵辭(文敎部次官代讀), 歡迎辭 및 祝辭의 順으로 進行됨.

2. 特別講演 및 主題講演

梁炳鐸 慶熙大學校 師範大學長의 特別講演과 本會 張一世 專門委員長의 “國家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의 大會 主題講演이 있었음.

3. 分科別 主題發表 및 討議

午後에는 各分科別로 나누어 主題論文 發表와 아울러 主題內容을 中心으로 眞摯한 討議가 進行되었음.

가. 主題發表

第1分科 (公共圖書館)

主 題：“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發表者：玄圭燮(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第2分科 (大學圖書館)

主 題：“大學圖書館 發展政策의 基底”

發表者：韓相完(崇義女專圖書館長)

第3分科 (學校圖書館)

主 題：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發表者：李正熙(京畿高等學校 司書教師)

第4分科 (特殊圖書館)

主 題：“特殊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發表者：姜俊浩(國會圖書館 司書官)

나. 分科別 討議 및 建議內容

第1分科 (進行者：李承周)

1. 圖書館法 改正 要望
2. 圖書館諮問委員會 設置(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所屬)
3. 圖書館行政 專擔部署設置 要望
4. 公務員任用令改正 要望(司書職昇進除限철폐)
5. 建議事項 積極推進 要望
6. 地方稅中 圖書館稅 徵收
7. 새마을運動에 圖書館事業 포함 必要

第2分科 (進行者：崔昌均)

1. 圖書館法 改正 要望
2. 全國圖書館 및 情報學에 관한 諮問委員會 設置 要望(大統領 所屬)
3. 政府에 圖書館擔當部署 設置 要望
4. 大學圖書館 基準(標準)制定 필요
5. 大學圖書館을 위한 組織構造의 調查가 必要
6. 圖書館人力 수급문제
7. 相互協力の 強化
8. 圖書館의 財政支援은 政府의 義務임을 強調
9. 大學圖書館部會 組織의 基礎作業 着手

第3分科 (進行者：蘇時重)

1. 學校圖書館法 制定 要望
2. 司書教師 T.O 配定 要望
3. 圖書費를 登錄金內 獨立項目으로 設定 要望



<大會에 參席한 會員들의 모습>

4. 敎課科에 “讀書敎育”科目制定 要望
5. 學校圖書館部會가 疏外되지 않게 할 것
6. 學校圖書館部會 研究發表會를 1年 1回 以上 開催할 수 있도록 協助해 줄 것
7. 지금까지의 建議事項이 實現되지 않은 理由를 分析해 줄 것

第4分科 (進行者: 李弼載)

1. 圖書館法 改正 要望
2. 圖書館 開發政策委員會 設置 要望(國務總理 所屬)
3. 特殊圖書館의 導協力機構을 國會圖書館에 設置하는 問題
4. 司書의 再敎育의 필요성 認定
5. 司書資格證 取得의 國家試驗問題의 討議
6. 司書의 共濟組合 設置의 필요성 認定

4. 綜合討議 및 建議事項 採擇

分科別 討議를 끝마치고 徐章錫 臨時議長의 主率로 分科別 報告와 綜合討議가 進行되었음.

建議事項 採擇은 各分科別 報告討議內容을 中心으로 作成키로 하되 各分科別 發表者와 報告者들에게 建議內容을 作成토록 委任하고 閉會하다.

大會 建議事項 採擇

1. 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요망

국민의 정신자원은 근대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교육의 중추적 기관인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선진된 각국에서는 그들이 근대화 초기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점은 도서관 육성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 영국은 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수상이 직접 도서관의 감독권을 갖는 한편 「국가도서관 자문평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육성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근대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육성을 위한 계획이 없으며 또한 도서관 육성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설치 요망

우리 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중앙관서에 도서관을 제도육성하며 관장하는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천여개의 도서관은 행정적인 공백상태에 놓여 있으며 칙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도서관

문교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성인교육계의 분담사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으며 또한 소속청이 문교부(시도교위)와 내무부(시·군)로 2원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행정지도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도서관 발전의 기준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지도육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대학도서관

대학행정의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 중앙부서에서는 직접 도서관행정업무에 관여치 않고 있으므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심장부라고 하는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확대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도서관

중앙부서에 직접 지도하는 행정부서가 없으며 장학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뿐더러 학교도서관 시설기준형이 없어 칙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특수도서관

공공, 대학, 학교를 제외한 각종 기업체, 연구단체, 정부기관, 군기관 등에 설치되는 특수도서관은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등 도서관을 위한 전담 행정부서가 없습니다.

오늘 날 기업의 조직화와 학술정보자료의 범람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도서관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특수도서관의 지도육성은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는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가 없으며 도서관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에서조차도 전체 도서관을 지도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행정은 완전히 공백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외국의 예와 같이 중앙행정부서에 도서관 전담기구(부서)를 설치하여 전체 도서관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예>

불란서 : 국민교육성장관 → 도서관국 → 지도과, 재정과, 총무과

미 국 : 보건교육복지성장관 → 도서관국 → 대학도서관

과,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도서관교육과

일 본 : 문부성 → { 사회교육국 → 사회교육과 → 도서관계
대학교육국 → 정보도서관과

3. 도서관법 개정 요망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그로부터 이미 13년이 경과되는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법은 13년전 우리 나라 도서관 사업의 개척과 기초작업을 위한 모범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이며 1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발전과 도서관의 발전에 따라서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법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법 규정에 가까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동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껏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이르러서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도서관기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도서관 육성을 위한 도서관법의 개정은 시급한 당면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검토하여서 시급히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주시옵기를 거듭 앙망합니다.

4. 공무원 임용령중 사서직급 분류의 재조정 요망

사서는 국가에서 전문직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의한 별표 1의 "1급내지 5급 직급표"에는 사서직이 행정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개정하여 학사직군에 분류하거나 독립직군으로 분류하고 현재 5등급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이 8등급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직군으로 분류할때는 아래(예시)와 같이 직렬직급을 분류하여 학사직군 다음항으로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도서관 도서비를 등록금내 독립항목으로 확보 주실 것

그간 학교도서관운영비는 당초에 후원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 등에서 극히 일부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사용해 왔기때문에 그 운영의 불실함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그나마 요즈음에와서는 학도호국단비중에서 조차 원칙적으로 보조받을 수 없게되어 이제

<사서직급표>

직군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1 학사	학예연구										
	편사연구										
	사서		사서	사서	사서연구	사서연구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2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연구	사서연구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연구	사서연구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는 학교도서관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학교교육이 주입식을 통하여 지식을 얻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동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학교도서관은 크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학교도서관을 이처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검토하시어 학교도서관의 올바른 육성을 도모해 주시고 그 운영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록금내 독립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76년 신학기부터 거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도서비 학생 1인당 연 240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출 것

○중 학교 도서비 연 960원(1기분 240원)월 80원

○고등학교 도서비 연1,800원(1기분 450원)월150원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 오는 우리 사회

독서 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